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양순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577

발 의 년 월 일 :2021년 08월 10일
발 의 자 :봉양순, 김기대, 김기덕, 김정환, 김태호, 노승재, 송명화, 안광석, 오현정, 유 용, 유정희, 이광성, 황규복 의원(13명)

1. 제안이유

○ 공공기관이 설립 또는 운영하는 장례식장과 체육시설 등을 1회용품 사용 제한 기관으로 규정하고, 민간 부문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업소를 자원순환우수업소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이 설립 또는 운영하는 장례식장과 체육시설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나. 자원순환우수업소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공공기관이 설립 또는 운영하는 장례식장, 체육시설 등에서는 1회용품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고, 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표창)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자원순환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가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업소 홍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 ~ ② (생 략)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공공기관이 설립 또는 운영하는 장례식장, 체육시설 등에서는 1회용품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고, 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④ ~ ⑤ (생 략)	⑤ ~ 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9조(표창)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표창)**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자원순환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가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업소 홍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문 서 번 호	2021072600000004

미 첨 부 사 유 서 (1 호)

요 청 인 : 봉양순 의원	담 당 : 조도형 과장 이원상 팀장 박주용 예산분석관
접 수 일 : 2021.07.26	
회 신 일 : 2021.08.04	내용문의 : 02-2180-7954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 예산정책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제3조제1항제1호)

1) 추계결과 = 10,000천원(연평균 2,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2,0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비용은 2022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2022~2026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2)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합계) = 10,000천원(연평균 2,000천원)

- 총비용 = 우수업소 홍보
= 10,0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우수업소 홍보 (제9조제4항제1호)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소계(b)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총 비용(b-a)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 우수업소 홍보 = 10,000천원
= 연간 우수업소 홍보 비용×5년
= 2,000천원×5년

※ 연간 우수업소 홍보 비용 :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의 '2021년 착한가격업소 홍보 등 운영비' 예산 2,000천원 적용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추계세제팀장　이원상
예 산 분 석 관　박주용
☏ 02-2180-7954
e-mail : pjooyong@seoul.go.kr